

#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

-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· 정책서민금융 확충 · 복지 지원 확대의 3단계 보완 방안

2018. 1. 11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현황 및 문제점 .....	2
III. 추진 방안 .....	4
1.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.....	5
2. 정책서민금융 확충 .....	9
3. 복지 지원 확대 .....	12
IV. 추진 일정 .....	15

## I. 추진 배경

□ 고금리 대출 시장은 신용위험이 높고 상환능력이 비교적 낮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시장

-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,
- 무분별한 대출로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키고 채무불이행을 양산\*하는 등 사회적 비용 유발

\* 금융 채무불이행자 추이(신정원, 만명) : ('15) 103.1 → ('16) 97.6 → ('17.6월) 93.8

⇒ 이에 따라, 새정부는 주요 국정과제\*로 '18.2.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%로 인하 추진(대부업법·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)

\* (국정기획위)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, 단계적으로 20%로 인하('17.7월)

□ 최고금리의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및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“대출시장의 정상화”의 일환

- 최대 293만명의 저신용 차주가 연간 약 1.1조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(금융연·금융위 추산)
- 대부업자의 대출심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“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”을 정착시키고,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을 방지

⇒ 반면,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를 완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

- ① (불법사금융)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 필요
- ② (정책서민금융) 대부업자 등의 신용평가 미흡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까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
- ③ (복지지원)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도 모색

◆ 최고금리 인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,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방안 모색이 필요

## II. 현황 및 문제점

### 1. 불법사금융 단속

- **(현황)** 관계 부처 합동 ‘불법사금융 척결 TF’를 중심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

\* 불법사금융 단속실적(경찰청, 건) : ('15) 979 → ('16) 1,037 → ('17.10) 1,192

- **(문제점)**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산 가능성, 불법사금융업자의 정보통신망 활용 확대 등 단속의 여건이 변화

\* 미등록 대부 관련 민원접수·상담(금감원, 건) : ('15) 1,220 → ('16) 2,306 → ('17.11) 2,541

-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한 단속과 처벌\*이 필요한 상황

\*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법률상 처벌수준은 최대 벌금 5천만원이나, 통상의 벌금 부과액은 수백만원 수준으로 불법억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

- 불법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\*, 신규 수법 등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처간 공조 강화 요구

\* 금융감독원에서의 온라인 카페·SNS상 불법 사금융 정보 제보건수 : '16년 1,296건 → '17년(~9.21.) 1,598건

### 2. 정책서민금융

- **(현황)**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 금융부담 경감에 노력

\* 4대상품 공급 추이(조원) : ('14) 4.4 → ('15) 4.7 → ('16) 5.0 → ('17,잠정) 6.7

\* 신복위 채무조정 현황(만명) : ('14) 8.6 → ('15) 9.1 → ('16) 9.6 → ('17.8월) 7.6

- 장기연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한 시효 완성채권 소각('17.8월~)

\* 소각실적('17.11월) : 공공기관 21.7조원(123만명), 민간 채권 4.6조원(130만명)

-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대책 발표('17.11월~)

\* 장기·소액 연체 채무자 규모(10년 이상, 1,000만원 이하 연체자) : 159만명, 6.2조원

- **(문제점)**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저신용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애로 발생 우려
- 대부업자 등이 한계차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금이용까지 제약될 가능성
  - 이들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지원이 필요하나, 별도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
-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 차질없는 경제적 자활·재기 지원이 필요

### 3. 복지 지원

- **(현황)** 공공부조\*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 중
  - \* 국민기초생활보장('00), 긴급복지('06),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('14) 등
  - \* (지원현황)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3만명, 긴급복지지원 38.7만명('16년)
- 특히, 새 정부 들어 “사람 중심의 복지제도” 구축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 수준 확대 등을 추진\*
  - \* 복지제도의 포용범위 확대를 위한 「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」('17.8월)
- **(문제점)** 금융 이용 취약계층이 복지 제도의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
  - 금융이용자의 경우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\*, 복지 제도와의 접점도 적어\*\*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
    - \*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(321명) 결과,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81.9%
    - \*\* 서비스를 인지해도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여 신속한 지원 곤란
  - 실질적인 경제적 곤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\*을 감안하여 복지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
    - \* (예시) 소득이 있어도 채무조정 중인 등의 이유로 실제 경제적 능력은 낮은 경우 등

### Ⅲ. 추진 방안

- ◆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,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
- ◆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자금수요 지원
- ◆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 상환부담을 적극 완화하고,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금융 수요 흡수



보완 대책

## 1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[ 범부처 불법사금융 TF ]

◆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 및 제도 정비 추진

가. **범부처 일제 단속** : 최고금리 인하 전후인 '18.2.1.~4.30.간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 엄단

\* 단속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'19년 中 재실시 여부도 검토

- (일제 단속 체계) 범부처 공조체계인 국무조정실 內 '불법사금융 척결 TF' 총괄 하에 일제 단속 실시('18.2.1.~4.30. 3개월)
- ① (법무부·검찰) 대검 형사부 중심의 불법사금융(최고금리 위반, 불법 추심, 무등록 대부 등) 집중 대응체계 운영
  - 대검 형사부에서 59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수사방향 설정, 불법유형 수집, 성과분석 등 대응 총괄
  - 각 지방검찰청은 경찰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,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
- \* 특히, 피해자나 피해액이 많은 중요사건은 부장검사 중심으로 철저 수사
- ② (경찰청)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'지능범죄수사대'를 통해 조직적 불법사금융 사건을 집중 인지·수사
  - 일선 지능팀·강력팀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체제로 전환
- ③ (국세청) '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' 및 지방국세청 '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'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세금탈루에 대응
- ④ (금감원·지자체) 민원 빈발업체, 대부업법상 불법 광고행위 등을 중심으로 '합동 집중점검' 실시
- ⑤ (과기정통부·방통위) 불법 웹사이트 차단(방통위, 방통심위), 불법이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(과기정통부)등 신속 조치

□ (집중신고기간 운영) 불법사금융의 철저한 적발·단속을 위해 일제단속 기간 중 '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' 운영('18.2.1.~4.30.)

○ 전화, 인터넷, 앱, 대면 등 가용한 모든 채널에서 신고 접수

※ 전화 : ☎ 1332(금감원), ☎ 112(경찰), ☎ 120(지자체)

※ 인터넷 : 금감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

※ 앱 : 「모바일 금융감독원」 앱에서 '불법사금융 제보·신고' 클릭

※ 대면 :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, 경찰 지구대·파출소 등

○ 원활한 신고·접수 및 대응을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대응인력 대폭 증원(18명 → 50명\*) \* 신고량 급증시 추가 증원

- 접수건은 즉시 피해상담 및 구제\* 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검·경 수사의뢰를 통해 단속·처벌로 신속 연계

\* 피해자 법률지원, 분쟁조정, 정책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안내

□ (신고 활성화) 금감원, 검·경 합동으로 주요 피해사례 전파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, 집중신고기간 추진을 집중 홍보\*

\* 전광판, SNS, 방송, 생활밀착형 채널(지하철, KTX 등) 다방면의 매체 적극 활용

○ '불법사금융 파파라치' 전면 확대\*를 통해 신고 인센티브 부여

\* 제보 실적,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200~1,000만원 부여

(현행) 유사수선에 한해 시범 실시 → (개선) 미등록 대부, 보이스피싱까지 확대

---

나. **대응체계 개선** : 불법사금융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,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체계 구축

○ 특히,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(전화, 인터넷)에 대해서는 영업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

---

□ (모니터링) 금감원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

○ 정례적(1년)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, 이용자 특성 등\*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

\* 대출규모 및 이용자 수, 이용자 소득, 부채규모, 이용기간, 금리현황 등

○ 불법사금융 관련 신종 수법을 상시 모니터링·유형화

- (신속 대응)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3단계의 경보체계\*를 구축하고, 경보단계에 따른 관계부처별 신속대응 매뉴얼 확립

\* (금감원)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보단계 조정 → (국무조정실) '불법사금융 척결 TF'를 통해 발령·전파 → (검·경 등 관계부처) 매뉴얼에 따라 신속대응

※ 경보단계 주요 발동요건 및 대응 매뉴얼 예시

- ① 1급(심각) : (발동 요건) 불법사금융 규모 급증 포착 등 → (대응) 범부처 및 검·경 일제 단속 실시, 집중신고기간 운영
- ② 2급(주의) : (발동 요건) 불법사금융 증가 지속, 신규수법 확대 징후 포착 → (대응) 신규수법 집중 수사·단속, 부처간 피해·단속 사례 공유
- ③ 3급(안정) : (발동 요건) 불법사금융 감소 → (대응) 수사·단속 지속

※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'18년에는 '1급 단계'로 대응

- (영업기반 차단)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(유·무선 전화, 인터넷)에 대해 불법영업 차단 조치 정비

- ① (전화·문자 스팸) 불법사금융 업자의 스팸영업시 전화번호 도용을 사전 차단하고, 적발시 사후 이용중지도 대폭 강화

- 휴대전화 본인확인 실시\*로 명의도용 소지를 줄이고, 개인별 전화번호 변경 제한\*\*을 통해 번호 재도용 가능성도 최소화

\* 반기단위 전수 조사를 통해 취약번호(사망자,폐업법인)는 명의 변경·정지

\*\* 개인별 변경횟수를 3개월 내 2회로 제한하여 새 대포폰을 통한 재영업 방지

- 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 불법사금융 업자의 공공·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차단\*하고,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단속

\* 공공·금융기관 번호로 발신하는 경우를 포착하여 사전 차단

- 불법사용이 적발된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기간 확대(3개월 → 1~3년)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번호 재활용 예방

- ② (인터넷)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정보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, 주요 대형 SNS사업자와의 협력 강화

-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금감원 內 「시민감시단」의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\*하고, 방통심위의 중점 모니터링 추진

\* 「시민감시단」의 일부(300명)를 「온라인 시민감시단」으로 특화하여 선발·운영

- 적발건은 방통심위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삭제, 차단 등 조치
- 주요 대형 SNS(Social Network Service)를 운영 중인 해외 글로벌사업자와의 불법 대출정보 규제 관련 협력 강화
- \* 방통심위 주관으로 해외 글로벌사업자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자율심의 대상 불법 대출정보에 대한 국내법 준수 확인 및 자율 규제 적극 유도

- **(감독당국 조사권) 불법사금융 혐의자에 대한 대부업 감독 당국(시·도지사, 금융위)의 조사권 신설을 통해 수사기관 지원**
- \* 불법사금융 혐의자에 대한 당국의 자료제출요구, 사업장 조사 등 근거 마련

**다. 처벌 및 배상책임 강화 : 대부업법 정비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수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책임 강화**

- **(처벌 강화)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형벌 대폭 강화**
  - (무등록 대부) 5천만원 이하 벌금 → 3억원\*
  - \* 한국과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액은 최대 3천만엔
  - (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) 5천만원 → 3억원
  - (법정최고금리 위반) 3천만원 → 5천만원
- **(배상 책임 강화) 법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 확대**
  - (현재)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분만 부당이득 → (개선)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
- **(불법성 명확화) 불법사금융 업자가 합법적 대부업자와의 명칭 혼동을 이용해 영업하지 못하도록\* 법률상 명칭을 명확히 구분**
  - \* 불법사금융 업자는 법문언이나 언론 등에서 '미등록대부업자'로 불리고 있어 불법성이 퇴색되고 이용자에게는 합법적 업자와의 혼동을 유발
  - (현행) '미등록대부업자' → (개선) '불법사금융업자'

## 2 정책서민금융 확충 [ 금융위 ]

- ◆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 등을 통해 대출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자금수요 지원
- ◆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

가. **상환능력이 있는 경우** : '18.2.8일부터 제도권 자금이용 기회 감소를 고려한 특례상품 한시 공급(가칭 안전망 대출)

※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상품도 차질없이 공급

\* 공급 실적(조원) : ('14) 4.4 → ('15) 4.7 → ('16) 5.0 → ('17잠정) 6.7

- (지원대상) ①'18.2.7일 이전 ②금리 24% 초과 대출을 받은 자로,
  -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하여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신용·저소득\*자
  - \* (저소득자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 
(저신용자)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
- (공급기관) 전국 15개 시중 은행
  -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% 보증 방식으로 운영
- (공급목표) '18~'20년간(3년 한시운용)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, 상품수요 추이를 보아가며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
- (대출한도)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
- (금리) 12~24%(금리와 보증료 포함)
  - 고금리 대출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증심사\* 결과에 따라 적용 금리와 보증료 수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
  - \* 소득, 부채, 연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체계 운영

- **(금리우대) 대출 성실상환시 적극적인 금리인하 혜택 적용**
    - 통상의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(예 : 10.5%)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%p 인하
    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 가능
  - **(상환방식) 이용자가 성실하게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**
    - 다만,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당장의 월납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\*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운영
- \* (27.9%로 대부업 대출시)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으로, 월상환액 116,250원  
(18%로 안전망 대출시)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, 월상환액 90,093원

**나.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: 적극적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채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 지원**

- ① **(상담 강화) 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, 상담인력 증원\***(18년)
  - \* 광역시 등 주요 통합지원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 증원 (20명)
  - 상담결과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하고,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등 자활 지원
  - 신복위가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넘어 취약계층의 신용상담 및 채무관리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
- ② **(신복위 채무조정) 대출지원이 어려울시 신복위 채무조정\***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재기·자활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
  - \*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: ① 연체 90일 미만 단기연체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  
②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

① 단기연체 채무조정시의 이자율 감면폭\*과 상환 유예기간\*\* 확대를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 지원

\* 감면폭 : (현행) 이자의 절반(예 : 연30% → 15%) → (개선) 연 10% 이내

\*\* 유예기간 : (현행) 1년 → (개선) 2년

- 사회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고령층)은 이자율 30% 추가 감면

② 장기연체 채무조정시 채무자 소득 흐름을 감안한 상환일정 조정\* 및 상환유예기간 확대\*\*로 탄력적 채무조정 도모

\*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청년·직장인은 상환액이 점차 증가하는 상환방식 제공

\*\*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시의 상환유예기간 : 최대 2년 → 3년

③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 확대

- 단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을 확대\*하고, 신용카드 발급 인센티브 조기 적용\*\*

\* 감면 혜택 : 2년 성실상환시 이자율 20% 인하, 4년 성실상환시 20% 추가 인하

\*\* 카드 발급 요건 : 성실상환 2년 이상 → 1년 6개월 이상

-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긴급생활자금 지원\* 및 신용카드 사용 한도\*\* 확대

\* 지원요건 완화 : 성실상환 9개월 이상 → 6개월 이상 (200만원~1,500만원)

\*\* 사용한도 확대 :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→ 월 150만원

③ (법원 회생·파산 연계)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운 경우 신복위와 전국 14개 지방법원간 회생·파산 신속연계(Fast-track) 지원

○ 개인 회생·파산 신속연계시 신복위의 회생·파산 소요비용 (약 200만원) 지원 범위 확대('18.상)

\* 지원범위 확대 :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 → 차상위계층, 일반장애인 등 포함

○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복위에서 전국 지방법원별(5개 권역)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

3

복지 지원 확대

[ 금융위·복지부 협업 ]

◆ 서민금융과 복지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지원의 규모·대상 확대로 취약계층 자금애로 완화 추진

가. **정보 사각지대 해소** : 취약계층이 '몰라서'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 해소

□ (복지수요 발굴) 상환능력이 부족한 금융이용자가 '몰라서'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분야와 금융분야간 연계 강화

○ 채무조정·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, "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"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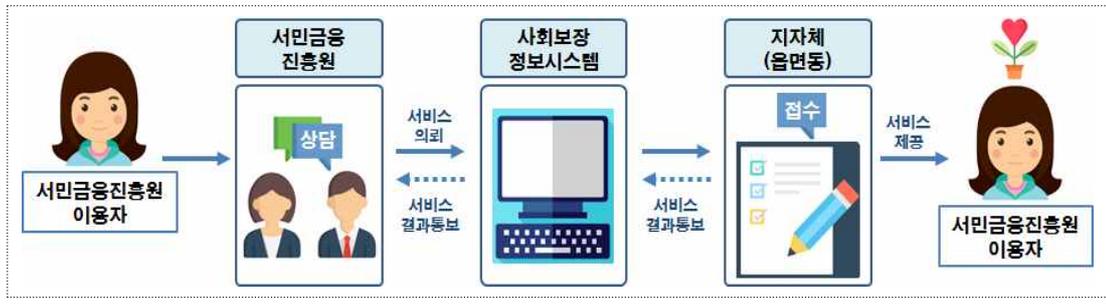
\*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(321명) 결과,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81.9%

※ '18년중 광역시 등 주요 통합지원센터 16개소로 전면 확대

< 연계 절차 >

-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가 복지서비스 필요시, 복지부(사회보장정보원)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(읍·면·동)로 신청 대행
- ② 읍·면·동 복지업무 담당자는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 검토 후 지원

<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복지 서비스의뢰 흐름도 >



○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\*하고, 전국 226개 시군구 「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」에서 복지지원 등 연계

\*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의 1,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(17.11월),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 발굴

- **(서민금융수요 발굴)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'몰라서'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복지분야에서 서민금융수요 발굴**
  - 복지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금융지원 필요시, 읍·면·동 복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정책서민금융·채무조정 지원까지 연계

**나. 탄력적 복지제도 운영** :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시 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애로 고려

\*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용범위 확대

- **(기초수급자)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여부 판단시 과도한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애로 고려**
  - 기초수급가구의 재산 확인시 부채는 공제하고, 소득 산정시 부양의무자의 채무변제액은 필수지출비용으로 소득에서 차감
  - 선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심각한 생계곤란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\*
- \*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지원 가능
- **(차상위 계층)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, 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**
  -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시 가구소득에서 신복위 및 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
  - 선정기준 미충족 가구라 하더라도 심각한 생계곤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

## 다. 지원 수준 확대 :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

\* 기 발표('17.8월)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

### □ (기초수급자)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과 보장수준 확대

-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의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'부양의무자 기준' 완화\*를 통해 포용의 대상을 확대(~'22)

\* 수급자·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·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폐지('17.10월)  
→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·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폐지('22년)

- ② 기초급여 지급 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을 1.16% 인상('18.1월~)

\* ('17) 447만원 → ('18) 452만원(4인가구 기준, 생계급여 1.6만원 인상)

- ③ 주거급여(임대료 지원) 수준을 순차적으로 상향(연 2.9%~6.6%)

-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43%이하자에서 45%이하자로 확대

- ④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비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까지 인상(~'20)

\* (현재) 최저교육비의 31.4~66.9% → ('18) 50~70% → ('20) 100%

### □ (차상위 계층)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및 수준 확대

- 사업 지원요건인 '경제적 위기'의 인정범위 확대('17.11.3일~)

\* (현행) 주소득자(가장 등)의 실직 및 휴·폐업 → (개선) 주소득자(맞벌이 등)의 실직 및 휴·폐업,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 포함

- 긴급복지지원시 지급액 상향('18.1월~)

\* 생계지원 : ('17) 115.7만원 → ('18) 117만원(4인 기준),  
주거지원 : ('17) 63.6만원 → ('18) 64.3만원(대도시, 3~4인가구 기준),  
연료비 지원 : ('17) 월 9.5만원 → ('18) '18년 월 9.6만원 (10월~3월 기준)

### □ (의료비) 취약계층의 주요 긴급수요인 의료비의 보장 확대('18~)

- 건강보험 지원시 소득분위 하위 50%에 대한 본인부담액 하향\*

\* (1분위) 122→80만원, (2~3분위) 153→100만원, (4~5분위) 205→150만원

- '재난적 의료비' 지원 범위 확대(4대 중증질환→모든 질환)

## Ⅶ. 추진 일정

□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 및 일정에 맞추어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

○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

추진과제별 필요조치		일정	소 관
<b>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</b>			
1.범부처 일제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범부처 일제단속(2.1~4.30일, 3개월)</li> <li>불법사금융 파파라치 운영 등 신고 활성화</li> </ul>	‘18.2월~ 지속	범부처 합동 금융위
2.대응체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발표</li> <li>불법사금융 신속대응 매뉴얼 구축</li> </ul>	‘18.5월~ ‘18년중	금융위 국조실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법전화번호 이용중지기간 확대 (3개월 →1~3년) 등</li> </ul>	‘18.2월~	과기 정통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시민감시단 출범(300명)</li> </ul>	‘18.2월~	금융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SNS 등 해외사업자 자율협력 강화</li> </ul>	‘18.3월~	방통위
3.처벌 및 배상책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형벌 강화(5천만원 → 3억원) 등 대부업법 개정</li> </ul>	‘18년중	금융위
<b>정책서민금융 보완</b>			
1.특례보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례 신상품 출시(안전망 대출)</li> </ul>	‘18.2월~	금융위
2.적극적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무 절차 개선 및 인력증원</li> </ul>	‘18년중	금융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</li> </ul>	‘18.3월~	금융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채무조정 유예기간 확대, 이자율 감면 등 신복위와 법원간 회생·파산 신속연계 (fast-track) 활성화</li> </ul>	‘18.6월~	금융위
<b>복지지원 확대</b>			
1.정보 사각지대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복지 지원 연계 확대(16개소)</li> </ul>	‘18.2월~	복지부 금융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체정보를 통한 복지수요자 발굴</li> </ul>	‘18.3월~	복지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읍·면·동 복지상담을 통한 금융수요 발굴</li> </ul>	‘18.6월~	복지부
2.탄력적 복지제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탄력적인 복지제도 운영</li> </ul>	상시	복지부
3.지원 수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초급여 지원제도 개선</li> </ul>	‘18.1월~	복지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긴급복지 지원 확대</li> </ul>	‘18.1월~	복지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</li> </ul>	‘18.1월~	복지부